

당구야놀자 협력점 계약서

본 계약은 무인당구장 운영 시스템의 기술 사용 및 운영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이념을 토대로 체결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당구야놀자(이하 "갑")가 보유한 무인당구장 운영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협력점 운영자(이하 "을")가 자신의 상호를 유지한 채 사용함에 있어, 그 권리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성격)

1. 본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기술 사용·운영 협력 계약이다.
2. "을"은 점포 가맹점이 아니며 '당구야놀자' 브랜드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3.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상호 및 브랜드 사용 제한)

1. "을"은 기존 당구장 상호·간판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당구야놀자' 상호, 로고, 디자인을 매장 내외 간판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없다.
3. 단, 환경에 따라 본 시스템 사용 매장임을 나타내는 소형 안내 표지판 등은 "갑"과의 사전 협의 후에 가능하다.

제4조 (기술 사용 범위)

1. "갑"은 "을"에게 무인 점포 운영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
 1. 무인 결제 키오스크 시스템
 2. 조명 컨트롤러 자동 연동 시스템
 3. 24시간 무인 매장 관리 시스템
 4. 기타 메뉴 및 기능 관련 기술
2.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설치 및 초기 세팅)

1. 시스템 설치 및 초기 세팅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수행한다.
2. 설치 비용, 매장 규격, 설비에 따라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제6조 (기술사용료 및 비용)

1. "을"은 "갑"에게 매월 기술사용료 22만원(VAT 포함)을 매월 5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2.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브랜드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 (운영의 독립성)

1. 매장 운영, 직원 관리, 요금 책정, 영업 형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2. "갑"은 운영 지침을 강제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술 지원만 제공한다.

제8조 (데이터 및 보안)

1.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운영 데이터는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으로 "갑"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및 영업 정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제9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계약 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목적에 반하는 브랜드 무단 사용
 2. 기술 사용료 2회 이상 미지급
 3. 기술시스템의 임의 변경 및 도용
2. 계약 종료 시 "갑"의 시스템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갑" 소유 장비는 협의 하에 반납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제11조 (가맹점 전환)

1.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가맹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가맹 계약 체결을 통해 '당구야놀자' 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가맹 전환 조건은 별도 가맹계약서에 따른다.

제12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기술적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합의로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계약 체결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갑 (공급자)

- 주소:
- 상호: (주)당구야놀자
- 대표자: (인)

을 (협력점 운영자)

-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인)